등록번호	건설산업과-7400
등록일자	2018. 11. 20
결재일자	2018. 11. 20
공개구분	비공개(5)

★주무관	행정사무관	건설산업과 과장	건설정책국장
권영일	김학원	박병석	2018. 11. 20. 정경훈
협조자	규제개혁법무담당관		김명준

건설업 등록규정(예규) 개정 추진(안)

주요 검토사항	
정 책 중 요 도	
민원 · 갈등 가능성	
기관간 이견가능성	
홍보대책 필요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
서민생활 관련성	

◈ **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**시 **제재처분**의 **실효성을 확보**하고,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○ **(개선) 체불, 부당특약 등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게 함(2회 위반시 영업정지)(감사원 지적사항<’18.3> 반영)**

○ **시설원예기술사(기사)**의 등록기준 인정(농림식품부 건의, ’18.4)

건설정책국 [건설산업과]

Ⅰ 개정 배경

1.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

○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**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**에도 **제재처분**으로 보게 하여 **처분 실효성** 확보 필요

- 감사원 수감결과('18.3) 반영 -

※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(건설업 관리규정 제7장)

2.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현행화

○ **온실설치공사**는 금속구조물 · 창호공사업*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어,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**시설원예기술사(기사)**는 **등록기준(기술능력)으로 인정** 필요

- 농림축산식품부 건의('18.4) -

*** 동일 · 유사 업종간 통합 · 조정을 통한 공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물공사업, 창호공사업, 온실설치공사업을 금속구조물 · 창호공사업으로 통합('03.8.21)**

II 개정 내용(안)

□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**'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'**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보게 하여,

○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**같은 위반행위**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함.(안 관리규정 제7장)

- **(현행) 하도급대금 체불해소 시 시정명령대상이 없어 종결처리**
- (변경) 시정명령 전 **체불이 해소되더라도 제재처분**을 받은 것으로 봄

*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수 없다.(대판2009두1990)

□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**시설원예기술사(기사)**는 **등록기준(기술능력)으로 인정.**(안 관리규정 별지 5.)

Ⅲ 추진 계획

○ 관계부처 협의(‘18.11) 및 행정예고(‘18.11)

○ 규제 심사(‘18.12) 및 **공포·시행**(‘18.12)

붙임 :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(안) 1부. 끝.